##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별표에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한공회가 수행한 재무제표 심사결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치(단, 최종 조치가 경고 또는 주의 인 경우에 한함)

별표에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감사인 지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우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지정에 관한 사항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2]

부 칙 <제2022-00호, 2022. .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의의 소집) ①・② (생 략)	제4조(회의의 소집)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	3			
시, 장소 및 목적사항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				
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 또는 안건을 발송함이 부적당한	 긴급한			
사안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u>化用化</u>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위원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3. 회계감독 관련사항	3. 회계감독 관련사항			
가.~라. (생 략)	가.~라.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마. 한공회가 수행주식회사 등의 외한 재무제표부감사에 관한 규심사결과 조치 (단, 최종 조 치가 경고 또 는 주의인 경 우에 한함)정 제28조제2항, 제 39조제1항			
<신 설>	바. 감사인지정주식회사등의외관련일반회부감사에관한법계법인우선률제11조, 같은법지정에관한시행령제16조,외사항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별표4의2]			